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정 재 봉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39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24.

발 의 자 : 정재봉, 전철규, 이충현,  
정정희, 조기만, 강선영,  
이종숙, 정장훈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고, 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,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및 용어 수정
- 자전거이용 활성화 ⇒ 자전거 이용 활성화(조례 제명 등)
  - 자전거주차장 ⇒ 자전거 주차장
  - 자전거보관소 ⇒ 자전거 보관소

- 자전거대여소 ⇒ 자전거 대여소

- 기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나. 자전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다. 방치자전거 처리의 장소적 제한 개선 및 처분방법 정비(안 제9조 및 제12조)

- 방치자전거 처리 장소를 ‘자전거 주차장’에서 ‘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’로 확대

라. 자전거의 날에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8조)

마.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권장 규정 신설(안 제19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협조부서 : 교통행정과

다. 입법예고 : 2023. 2. 27. ~ 3. 6.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전거 이용시설”이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2호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2호부터 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.
2. “자전거 보관소”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(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)을 말한다.
3. “자전거 대여소”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

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
4. “자전거 수리센터”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

5. “공공자전거”라 함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(이하“구민”이라 한다) 및 강서구를 방문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·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2.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민의 권리와 책무) 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.

1.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
2.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
3.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

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.

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

관소 이외의 장소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,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, 공공청사,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,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제7조(자전거 주차장의 유지·관리)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)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. 다만 자전

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.

제9조(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)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, 공공청사, 대형유통·판매시설, 공동주택단지, 공원, 하천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

1.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장
2.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나 유통판매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
3.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, 택지개발 등의 사업 시행 시 사업주체

③ 구청장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세척기 등 부속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자전거 대여소·수리센터의 운영)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자전거의 대여 및 수리센터의 수리비용, 자전거 세척기 이용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. 다만, 자전거 수리센터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리·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유료로 할 수 있다.

제12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① 누구든지 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가 무단 방치자전거로 판명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

③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의해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는 분해·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의해 생산된 자전거는 저소득주민, 학교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·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(이하“안전체험교육장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민간단체 등이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용자

할 수 있다.

제14조(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교,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교 등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, 교통안전표지판, 안전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우선 설치·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자전거 보험)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,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1.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.
2.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.

제16조(자전거의 등록)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 등에게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17조(민간위탁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

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·보조할 수 있다.

제18조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그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(공무원의 자전거 이용)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**자전거주차장 요금표(제8조 관련)**

(단위 : 원/구획)

구분	1회주차시 (1시간당)	1일주차권	월 정기권
주차요금	200	1,000	15,000

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자전거이용시설”이란 자전거도로, 자전거 주차장,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)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·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
2. 연도별 활성화계획
3.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① 누구든지 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·보관·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## 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의3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,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,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1.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·모양·수량 및 제조회사명
2.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·보관한 일시
3.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
4.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

가.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,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

나. 기증,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.

1. 매각. 이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

각의 예에 따르되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.

## 2. 기증

### 3.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

#### 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,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.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